

「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8월 29일

나. 발 의 자: 김정도 · 김근한 · 김민성 · 김원섭 · 박교상 · 소진혁 · 양진오 · 이상호 · 이지연 · 장미경 · 정지원 · 추은희 의원(12명)

다. 회부일자: 2023년 8월 30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9월 7일

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정 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복지사각지대인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미시 관내 어르신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기금의 용도 신설(안 제8조제8호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, 제37조, 제37조의2, 제37조의3
- 부서검토: 노인장애인과 의견제출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기 타: 신 · 구조문대비표

-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부서검토: 노인장애인과 의견제출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복지사각지대인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미시 관내 어르신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경로당 등록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있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은 구미시 노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미등록경로당이 등록경로당으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노인복지 정책에서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